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3년 8월 25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류종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8. 25.
발의의원 : 박종필, 권기훈,
김재용,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이재화, 이태손,
전경원, 정일균,
하중환 의원
(11명)

1. 개정 이유

영업용 자동차,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유한 5등급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신청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운행 제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운행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로 아래 차량에 대해서 일정 기간까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함(안 부칙 제2조)

- 영업용 자동차('23.11.30→'25.11.30까지로 변경)
-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23.11.30→'25.11.30까지로 변경)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23.11.30→'27.11.30까지로 변경)
-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27.11.30까지로 신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27.11.30까지로 현행 유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791호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12조제1항 운영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3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한 자에 한함)
3.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조례 제5791호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u>제2조(운행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u></p> <p><u>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 	<p>조례 제5791호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u><삭 제></u></p>

관 계 법 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 3. 26.>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 9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